

의안번호	2215325
의 퇴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6.01.27.
추계번호	25C7000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5년간 총 5,100만원(연평균 1,02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-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총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30~203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30	2031	2032	2033	2034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(안 제6조)	-	-	51	-	-	51	10.2

주: 1.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

2.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추계기간을 2030년부터 2034년까지로 설정함

3. 단수조정으로 인해 합계와 세부내역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기본계획의 수립)	(제2항)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5조의2 (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·운영하고,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. (제2항)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6조의2 (장애학생의 보호)	(제2항)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다만,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본 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기본계획의 수립)	○	
2	안 제15조의2 (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·운영)	—	·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·운영하도록 규정하나, 현재 각 시·도교육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(3월, 9월)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3	안 제16조의2 (장애학생의 보호)	×	· 현행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는 학교폭력 피해·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가 특수교육 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· 개정안은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피해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, 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· 개정안 시행 시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청취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급 단가 및 개최 횟수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· 참고로, 현행 법령은 교육전문직원, 의사,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등을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의 수립 주기 단축(5년→3년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현행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추계¹⁾
 - 현행법에 따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’25~’29)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,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차기 계획 수립 시점인 2030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, 자료 제작,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,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함
 - 수립 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수립 단가는 현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추계기간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5년으로 설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5년간 총 5,100만원으로 추계됨
 - ’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(4,310만원)을 준용하고,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1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·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[표 2]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30	2031	2032	2033	2034	합 계	연평균
개정안(A)	49	-	51	-	-	99	19.8
현행(B)	49	-	-	-	-	49	9.7
추가재정소요(A-B)	0	-	51	-	-	51	10.2

주: 1.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인해 합계와 세부내역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